##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8 발의연월일: 2021. 6. 14.

발 의 자:류호정・유경준・장혜영

강민정 · 강은미 · 이은주

장경태 · 김의겸 · 배진교

심상정 • 유상범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 8,000마리가 넘는 동 지난해 기준으로 350마리가 매일 버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

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 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 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 5조의2 및 제4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운영 등록 등) ① 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 추어 동물보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소의 요건 및 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실 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 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
	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u>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u>
	시설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
	운영 등록 등) ① 동물보호소
	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
	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
	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동물보
	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u>•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u>
	<u>야 한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5의2.
 (생 략)

 6. ~ 15.
 (생 략)

 ③・④
 (생 략)

<u>은</u>	동물	보호스	<b>소</b> 에	예신	-의	범	위
에서	네 보.	호비용	우의	전부	또 는	<u>-</u>	일
부활	를 지:	원할 :	수 있	J다.			
4	제1형	-  - 에 디	 가른	 동물	보호	<u>소</u>	의
		등록					
		조사의					
		에 필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보
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